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69,003,791	23,070,114
일반회계	732,811,731	21,984,352
특별회계	36,192,060	1,085,762
공기업특별회계	18,207,495	546,225
상수도사업관리	18,207,495	546,225
기타특별회계	17,984,565	539,53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4,367,402	131,022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10,090,000	302,700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1,500	945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1,530,978	45,9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4,566	30,137
주차장관리	586,311	17,589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373,808	11,21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785,93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